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018 발의연월일 : 2024. 9. 13.

발 의 자:김태년·김영배·김준형

김태선 · 권칠승 · 한민수

김영진 • 박지원 • 송기헌

박용갑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애인연금 지급에 따른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 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러한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 감액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,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 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각각의 기초연금액 20%를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.

이에 기초급여 부부수급자에 대한 감액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장애 인연금 부부수급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6 조제3항 삭제 등).

법률 제 호

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을 삭제한다.

법률 제12620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중 "제6조제3항 및 제4항"을 "제6조제4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6조(기초급여액) ①・② (생	제6조(기초급여액) ①・② (현행		
략)	과 같음)		
③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	<u><</u> 삭 제>		
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			
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기초급			
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			
금액을 감액한다.			
④ ~ ⑥ (생 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		
법률 제12620호 장애인연금법 일	법률 제12620호 장애인연금법 일		
부개정법률 부칙	부개정법률 부칙		
제4조(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지급	제4조(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지급		
에 관한 특례) ① (생 략)	에 관한 특례) ① (현행과 같		
	<u> </u>		
② 제1항에 따라 수급권자에게	②		
기초급여액을 지급하는 경우에			
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	제6조제4항		
정에 따라 기초급여액을 감액			
할 수 있다.			